

생활보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생활보호란

가계를 지탱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곤란에 처한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를 하거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적의 분에 관해서는, 적법으로 일본에 체제하며, 활동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 영주자, 정주자 등의 채류 자격을 보유할 경우에 생활보호법에 준하여 보호가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지원, 다른 법률 및 시책, 자산 등을 활용해도 국가가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궁핍한 정도에 따라 지원합니다. (관계법령 생활보호법)

○부조의 종류

생활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조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급부됩니다.

- (1) 생활부조
의복비, 식비, 광열수도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 (2) 주택부조
집세, 지대 등 주택에 필요한 비용
- (3) 교육부조
학용품비, 급식비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 (4) 의료부조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시술에 필요한 비용
- (5) 개호(간병)부조
개호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6) 출산부조
출산에 필요한 비용
- (7) 생업부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및 비용
- (8) 장례부조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

이러한 부조는 의료부조, 개호부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후생과 0798-35-3056

○생활복지자금의 대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고령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비용 등을 일정 조건 하에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 사회복지협의회(생활상담지원과) 0798-37-0010

혹은 거주하고 계신 지구의 민생, 아동위원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